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(CCTV) 의무 설치 대상을 보완하여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있는 동력분산식 차량에 대해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, 영상기록장치가 실효적으로 설치되도록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중 “위치한 동력차로서”를 “위치하고”로, “있는 동력차”를 “있는 동력차 및 객차”로 한다.

별표 4의4 제1호 본문 중 “동력차”는 “동력차 및 객차”로 한다.

별표 4의4 제1호 나목1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4의4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)	제30조(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)
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”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열차의 맨 앞에 <u>위치한 동력차로서</u>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<u>있는 동력차</u>	1. ----- <u>위치하고</u> --- ----- -- <u>있는 동력차 및 객차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612